

표준특허 분야 국제 라이선스 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나 지 원

*논문접수 : 2025. 4. 17. *심사개시 : 2025. 4. 21. *게재확정 : 2025. 5. 8.

〈목 차〉

I. 서론	2. 독일
II.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선스	3. 영국
1. 표준과 표준특허	4. 미국
2. FRAND 확약의 의미	5. 중국
3. 의무로서의 FRAND 라이선스	V. 결론
III. 표준특허 분야 국제 라이선스 분쟁 현황	1.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
1. 통신 분야 최근 사례	2. 기업 차원의 분쟁 대응 방안
2. 자동차 분야 최근 사례	3. 시사점과 향후 과제
3. 소결	참고문헌
IV. 주요 각국의 표준특허 관련 판결과 정책 동향	
1. 유럽연합(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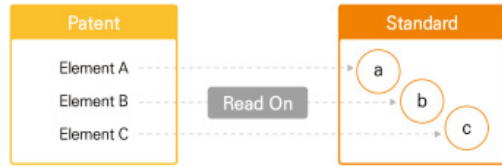
I. 서론

기술 표준은 정보통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다. 현재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둘러싼 국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표준특허 또는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약칭 “SEP”)란 표준화기구(SDO)에서 제정한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를 말한다. 즉 표준특허는 해당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으로 규정된 기술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를 의미한다

1) 법학박사, 변호사, 변리사

(그림 1 참조).²⁾



[그림 1] 표준특허의 개념

표준특허는 개별 산업 분야의 규범(norm)에 해당하는 표준(standard)을 특허(patent) 기술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조명되고 있다. 반면 표준특허는 모든 시장 참가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는 호환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없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 표준특허 라이선스에 있어서 표준특허 보유자는 자신의 특허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대해 강한 교섭력을 갖게 된다. 이에 대응하고자 표준화 기구는 특허권자의 FRAND

확약을 통하여 당사자의 교섭력 격차를 해결하고자 하였다.³⁾ 여기서 FRAND란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칭으로, 표준설정 과정에서 특허권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표준특허 기술을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허락하겠다는 의미이다.

표준특허 분야에서 FRAND 라이선스를 둘러싸고 그 개념 자체의 추상성과 협상의 불확실성에 의하여 분쟁은 이미 내재(built-in)되어 있다. 특히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둘러싼 분쟁은 표준 기술의 속성상 특정 국가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속성을 가진다. 현재 3G, 4G, 5G 등 이동통신 표준에 다수의 표준특허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물인터넷(IoT),⁴⁾ 자율주행,⁵⁾ 전기자동차⁶⁾ 관련 기술의 표준화 과정에 수반하여 기업

2) 특허청,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2021, 12면(그림 1 포함).

3) FRAND 확약의 유래는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 과정에서 특허권자에게 내려진 ‘동의판결’(consent decree)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말 미국의 Sherman 법 제정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업자 간의 카르텔을 결성·유지하는 데에 특허권이 중심에 있었고, 경쟁당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통해 특허권자에게 실시권을 무상 허락(RF) 또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RAND) 조건으로 허락하도록 하였다(Jorge L. Contreras, A Brief History of FRAND: Analyzing Current Debates in Standard Setting and Antitrust Through a Historical Lens (January 15, 2015). 80 Antitrust Law Journal 39 (2015), American University, WCL Research Paper No. 2014-18,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2374983>).

4) 2024.12.1.자 특허뉴스,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 급증, 한국이 ‘선도’, <https://www.e-patentnews.com/12106> <2025. 4. 5. 최종접속>; 사물인터넷 분야의 표준특허 라이선싱에 관한 최근 문헌으로 Igor Nikolic, Licensing standard essential patents : FRAND and the internet of things, London : Hart Publishing, 2021.

5) 2019.10.7.자 오토저널, 자율주행차 분야 표준특허 현황, <https://v.daum.net/v/NYTj72b261> <2025. 4. 5. 최종접속>.

6) 2024.7.10.자 특허뉴스, 친환경자동차 기술·표준특허를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 필요, <https://www.e-patentnews.com/11529> <2025. 4. 5. 최종접속>;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들의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표준특허 라이선스의 개요와 국제적 라이선스 분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관련 판례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선스의 개념을 개관한다(Ⅱ), 그리고 우리 경제와 밀접한 통신·자동차 산업의 주요 표준특허 분쟁 사례를 살펴본다(Ⅲ),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미국, 중국 등 주요 각국의 표준특허 관련 판례와 정책 동향을 정리한다(Ⅳ).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표준특허 분야 라이선스에 있어 정부와 기업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통상 관점에서 시사하는 점과 향후 과제를 언급하며 맺고자 한다(Ⅴ).

Ⅱ. 표준특허와 FRAND 라이선스

1. 표준과 표준특허

우리 생활 속에서 휴대폰 충전 단자나 Wi-Fi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기에 제조사가 달라도 기기들이 서로 호환이 가능하기에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다. 표준(standard)⁷⁾은 이처럼 서로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활히 호환되도록 해주는 공통의 기술 규격을 말한다. 표준이 없다면 각기 다른 기술이 난립해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산업 발전도 지체될 수 있다. 표준을 정함으로써 기술과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이 확보되고 기업들은 그 위에서 혁신 경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Wi-Fi나 5G 통신처럼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술에는 수많은 표준특허들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특허로 선언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FRAND 조건, 즉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락하겠다고 표준화기구(SDO)에 약속(확약)하게 된다. 이는 기술의 호환성을 위

및 관련 기술의 모듈화와 표준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자동차의 경우 각 업체별 모델별 제품(부품)들의 호환성 이슈가 없었으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방식과 통신방식이 반드시 사용되므로 특허 기술이 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7) ISO/IEC는 표준을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ISO/IEC Guide 2:2004, 3 Normative documents, 3.2 standard).

해 필수적이며 표준화기구(SDO)가 이러한 약속(확약)의 규칙을 정한다.⁸⁾

2. FRAND 확약의 의미

FRAND 확약은 표준 기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⁹⁾으로, 특허권자가 표준 채택으로 얻게 되는 이점을 고려하여 특허권 행사를 스스로 일부 제한하겠다는 확정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의사표시이다. FRAND 확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¹⁰⁾ 첫째, 로열티의 합리성으로 특허권자는 기술의 기여도에 비례한 적정한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 둘째, 비차별성으로 특허권자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일관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공정성으로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일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고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 이처럼 FRAND 확약은 특허권자와 이용자 사이 법적 지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로 역할을 하게 된다. FRAND 확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이해하는 경우, 라이선스 협상 당사자(특허권자와 실시희망자) 사이의 특수한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며,¹¹⁾ 이를 통해 특허권자는 자신이 확약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제안을 해야 할 의무가, 실시를 희망하는 제3자¹²⁾는 성실히 협상에 임할 의무가 도출된다. 즉 FRAND 확약은 단순한 도의적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법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과 제재가 가능하다.¹³⁾

8) 각종 표준화 기구의 현황과 표준에 포함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은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April 1, 2002). 90 California Law Review 1889 (2002),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84, Available at SSRN: <https://ssrn.com/abstract=310122>.

9) FRAND 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하여 ①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접근, ② 구속력 있는 청약으로 보는 접근, ③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계약법적 논의는 나지원, “FRAND 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13권 제3호(통권 제69호), 7-13면.

10) 나지원,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경인문화사, 2018. 111-113면.

11) 나지원, 위의 논문, 15-16면: FRAND 확약에 기하여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을 구할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표준화 기구를 ‘요약자’, 표준특허권자를 ‘낙약자’ 그리고 제3자인 잠재적 실시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예약이 성립했다고 본다면, 특허권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신의칙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

12) 구체적으로 제3자의 수익 의사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 경고 등에 대응하여 해당 특허에 대한 진지한 실시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독점규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FRAND 확약을 요구한 연혁적 이유로 경쟁법적 규제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으나, FRAND 확약이 제출된 이후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해서 경쟁당국의 개입보다는 계약법에 따라 계약위반 여부를 가려 FRAND 확약 위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로 김성기, 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에 대한 계약법적 검토, 산업재산권(Vol. 77), 2024. 4. 122면).

3. 의무로서의 FRAND 라이선스

표준특허는 표준에 포함됨으로써 얻는 이점과 맞바꾸어 특허의 배타적 독점적 권능의 일부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RAND 확약이 붙은 표준특허는 일반 특허와 권리의 행사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된다. 일반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자유롭게 침해(사용) 금지를 요구하거나 실시 협상을 거부할 수 있지만, 표준특허권자는 FRAND 확약에 따라 모든 실시 의향을 가진 이에 대해 합리적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 즉 경쟁자라도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면 사용을 허락해야 하여, 무단 사용 시에도 곧바로 침해(사용)금지를 관철하기보다 FRAND에 부합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FRAND 확약과 그에 기한 의무에 대해 계약법적, 특허법적 측면 이외에 경쟁법¹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FRAND 확약의 중요성과 SEP 보유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때문에 시장지

배적 지위 남용 내지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와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든 FRAND 위반이 곧바로 경쟁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대체적이다.¹⁵⁾ 결국 FRAND 라이선스 의무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약속이지만, 국가마다 이를 강제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은 상이하며, 계약법·특허법·공정거래법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 영역이라 할 수 있다.

III. 표준특허 분야 국제 라이선스 분쟁 현황

1. 통신 분야 최근 사례

통신 분야는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의 주요 무대이다. 특히 이동통신(3G/4G/5G) 표준과 Wi-Fi, 영상 코덱 등의 표준특허를 둘러싸고 특허권자와 제조회사 간에 다수의 표준특허 관련 분쟁이 있었다. 여기서는 2010년¹⁶⁾ 이후 발생한 주요한 통신

14) 경쟁정책의 근거가 되는 일련의 법규를 미국은 반독점법(Antitrust Law), EU는 경쟁법(Competition Law)이라고 칭한다. 한국은 독점규제법 내지 공정거래법으로 부르고 있다. 각 용어의 의미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시장의 독점 문제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을 공통적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15) Herbert Hovenkamp, FRAND and Antitrust, 105 Cornell L. Rev. 1683 (2020), p.1686; FRAND 의무 위반이 곧바로 반독점법 위반인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경쟁 질서를 훼손하여 소비자 후생에 해를 끼치는지에 따라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Hovenkamp 교수는 FRAND에 관하여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표준 설정 과정과 표준특허 분야에 정착되어 경쟁 환경 내에서 상당한 이점을 창출하고 있는 메카니즘으로 평가하고 있다(위의 논문, 1743면).

16) 2010년은 2007년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전 세계 모바일 산업과 생활 방식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스마

분야 분쟁 사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삼성 대 애플 사건

(Samsung v. Apple)¹⁷⁾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한 삼성전자(이하 “삼성”으로 약칭)와 애플 간의 “특허전쟁”을 배경으로 2011년에 시작된 이 분쟁¹⁸⁾에서 삼성은 3G 통신 표준특허를 기반으로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삼성이 FRAND 확약을 어기고 부당한 금지명령을 구했다고 항변하며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각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¹⁹⁾ 그 과정 중에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삼성의 행동이 경쟁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예비 판단하여 삼성으로부터 5년간 SEP에 대해 이동통신 기기 판매금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 의결을 받아내기도 했다.²⁰⁾ 두 회사는 2014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소송을

상호 취하하며 분쟁은 일단락되었고, 2018년 애플과 삼성은 미국 법원에서 모든 소송까지 취하하고 양사의 합의로 7년 간의 특허전쟁은 마무리된다.²¹⁾

나. 화웨이 대 삼성

(Huawei v. Samsung)

화웨이는 2016년 삼성 스마트폰이 자사의 4G 표준특허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중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도 맞소송으로 대응하였다. 화웨이는 삼성에게 악의적인 협상 지연(hold-out)을 이유로 중국 심천중급법원에 금지청구를 하였고, 중국 심천중급법원은 2018년 1월 삼성 중국법인들에 제품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²²⁾ 이에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18년 4월 화웨이에 대하여 중국 판결의 집행을 못하도록 하는 명령(anti-suit injunction)을 내리기도 했다.²³⁾ 2019년

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하다.

17) 이하에서 분쟁 및 사건을 특정함에 있어 당사자의 약칭을 사용하되, 한글은 “○○ 대 ○○ 사건(또는 판결)”로, 영문은 “△△ v. △△” 형태로 표시한다.

18) 최초 사건의 발단은 2010년 8월 애플은 삼성에게 일부 삼성폰과 태블릿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다고 경고하였고, 이후 2011년 미국에서 삼성을 “카피캣”이라고 비난하며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 한국, 미국(무역위원회 포함), 유럽, 일본 순으로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전쟁의 현황 등 상세한 분석자료로 나지원, 글로벌 특허전쟁 관전기(1)~(5), 대한변협신문(2013.4. ~ 2013.6. 연재).

20) 2014.4.29.자 EU 집행위원회 결정(Case AT.39939—Samsung—Enforcement of UMTS standard essential patents)

21) 2018.6.27.자 CNET News, <https://www.cnet.com/tech/mobile/apple-and-samsung-finally-settle-their-patent-dispute/<2025. 4. 5. 최종접속>;> 삼성과 애플의 최종 합의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22) Case (2016) Yue 03 Min Chu No. 1382.

23) Case No. 3:16-cv-02787-WHO, ORDER_GRANTING_SAMSUNG’S_MOTION_FOR_ANTISUIT_INJUNCTION

2월 삼성과 화웨이는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합의하며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²⁴⁾ 삼성과 화웨이의 분쟁은 한국과 중국의 대표 IT 기업 간의 표준특허 분쟁으로 평가된다.

다. 애플 대 퀄컴 사건

(Apple v. Qualcomm)

이는 세계적 스마트폰 기업인 애플과 모뎀 칩셋 분야 표준특허권자인 퀄컴 간에 벌어진 분쟁이다. 2017년 애플은 퀄컴이 아이폰에 필수적인 셀룰러 통신 특허에 대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하고, 칩셋 공급(no license, no chips)을 빌미로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고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퀄컴은 몇몇 국가에서 특허침해를 이유로 아이폰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내는 등 압박을 가하였

고, 결국 2019년 4월 양사는 글로벌 포괄 합의에 이르렀다.²⁵⁾ 양사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6년간 유효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2년 연장 옵션)을 체결하였으며, 애플이 퀄컴에 일정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은 종결되었다.²⁶⁾

라. 에릭슨 대 삼성 사건

(Ericsson v. Samsung)

이 사건은 통신장비 분야 표준특허권자인 에릭슨과 삼성 간의 분쟁이다. 양사는 과거부터 상호 간의 표준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었고 분쟁 발생 전인 2014년 7년간의 크로스 라이선스 합의를 했었다. 계약이 2020년 말로 만료되자 후속 계약 조건을 두고 양사 간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양측은 각자 유리한 법정지에서 상대방을 제소하게 된다.²⁷⁾ 삼성전자는 중국

24) 2019.2.27.자 Reuters News,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huawei-samsung-agree-to-settle-patent-dispute-in-us-court-idUSKCN1QG10Y/<2025. 4. 5. 최종접속>>;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후 화웨이가 한국 특허청에 삼성 미국특허 98건을 양도받은 사실이 알려져, 일정 규모의 특허 자산 이전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5) 2019.4.16.자 CNET News, <https://www.cnet.com/tech/mobile/apple-and-qualcomm-settle-heres-what-it-means-for-your-next-iphone/<2025. 4. 1. 최종접속>>

26) 미국 대법원이 2022년 애플의 퀄컴 특허 무효 소송을 기각하여 양사의 합의는 유지되고 있다. 애플은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모뎀 칩을 개발 중에 있고, 2027년까지 퀄컴 모뎀을 완전히 대체하고자 한다.

27) 특허권 침해소송은 특허권이 부여된 국가마다 침해소송의 전속관할을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을 1심 관할로 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28 U.S.C. 1400(b)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이 1심을, 항소심은 연방항소법원(CAFC)이 관할한다(김수철, 『특허라이선스 계약실무』, 한국재식재산연구원, 2017, 259-260면). 다만, FRAND 라이선스 분쟁을 특허침해가 아닌 계약위반에 따른 소송 형태로 제기하는 경우 다른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을 맡을 수 있다.

우한중급인민법원에 에릭슨 보유 표준특허의 글로벌 FRAND 로열티율 결정을 구하는 소송과 동시에 에릭슨에 대해 소송금지명령(ASI)을 신청하였다. 2020년 12월 25일 우한중급인민법원은 삼성 측 신청을 인용하며, 에릭슨이 중국 외 다른 국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기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세계적 ASI 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에릭슨은 미국 동부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반(反)소송금지명령(anti-ASI)을 신청하여,²⁸⁾ 2021년 1월 미국 법원은 삼성에게 중국 법원 명령의 집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등 복잡한 재판관할 충돌이 벌어졌다. 양자 간 법정 공방은 2021년 5월 두 회사가 새로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되었다.²⁹⁾ 이 사건은 중국 법원의 ASI 남용 등 국제적 소송경합, 재판관할³⁰⁾ 이슈가 부각되었다.

마. 언와이어드 플래닛³¹⁾ 대 화웨이 사건(Unwired Planet v. Huawei)

이 사건은 영국 법원과 중국 법원의 관할권 경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Unwired Planet은 영국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중국의 화웨이는 본사 소재지인 중국에서 FRAND 판정을 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2020년 8월 영국 대법원은 영국 법원이 세계 시장을 포괄하는 글로벌 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였다.³²⁾ 영국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기술표준에 대해 나중에 특허권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가에 관하여, 표준특허의 국제적 실시권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법원이라면 특허가 등록된 어느 나라 법원이라도 외국 특허를 포함한 표준특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료 금액을 결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³⁾ 이후 언와

28) Ericsson Inc. v. Samsung Elecs. Co., CIVIL ACTION NO. 2:20-CV-00380-JRG

29) 2021. 5. 7.자 매일경제 기사, 삼성-에릭슨 5G특허 분쟁 종료, <https://www.mk.co.kr/news/business/9862284> <2025. 4. 1. 최종접속>

30) 중국은 2024년 중국 「민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여涉外민사소송,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을 대폭 정비하였다. 중국 「민사소송법」의 국제적 소송경합(Parallel Litigation),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Forum Non Conveniens)에 관해, 양효령,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2024년 「중국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2024. 268-270면.

31) Unwired Planet은 PAE(Patent Asserting Entity) 내지 NPE(Non-Practicing Entity)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PAE는 과거 특허괴물과 같이 특허소송의 형태로 특허권을 주장하여 합의금이나 배상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NPE는 제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업 활동 없이 특허소송 및 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32) UKSC 37 [2020]

33) 김성기, 표준특허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영국의 Unwired Planet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Vol.

이어드 플래닛과 화웨이는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 사건은 유럽과 중국이 FRAND 라이선스 판단의 주도권을 두고 겨루는 양상이 되었고, 이후 각국 법원은 외국 법원의 ASI에 대해 자신도 AASI (anti-anti-suit injunction)로 맞서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³⁴⁾ 이 사건을 계기로 당사자의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막기 위한 국제조약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³⁵⁾

2. 자동차 분야 최근 사례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기계기술 중심 산업으로 표준특허 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최근 커넥티드 카와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자동차에 GPS, 텔레매틱스 등 통신 기술이 대거 도입되면서 3G/4G LTE 표준특허를 다수 보유한 표준특허권자가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 노키아 대 다임러 사건(Nokia v. Daimler)

이 사건은 자동차 분야의 첫 표준특허 분쟁으로 주목받은 사례이다. 노키아는 4G LTE 표준특허를 보유한 회사로, 메르세데스-벤츠 브랜드를 생산하는 다임러에 이들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요구하였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라이선스 부여 대상이었는데, 다임러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TCU(텔레매틱스 제어장치)를 부품 공급업체가 제조하므로 그 공급사와 라이선스 합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고, 반면 노키아는 완성차 제조사인 다임러에 전체 차량에 대한 완제품 단위 라이선스 원칙을 주장했다.³⁶⁾ 양사 간 협상이 결렬되자 노키아는 2019년 독일 법원들에 다임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일부 법원은 노키아의 손을 들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하자,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은 2020년 11월 해당 사안을 EU최고 재판소(CJEU)에 선결문제로 “SEP 보유자가 부품업체에 라이선스 제공을 거부하고

67), 2021.4. 234면.

34) SEP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관할권 경쟁이 혁신자의 이익과 실시자의 이익 간의 타협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연구로 Wentong Zheng, Jurisdictional Competition on Standard-Essential Patents, 14 N.Y.U. J. INTELL. PROP. & ENT. L. 1. (fall 2024).

35) 2021.1.22.자 지식재산뉴스, ‘표준특허의 실시권 재판의 관할권 확대’,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no=4751> <2025. 4. 5. 최종접속>

36) <https://www.law.kuleuven.be/ccm/blog/posts/connected-cars-and-frand-licensing-traffic-jams-the-cjeu-referral-in-c-18221-nokia-v-daimler> <2025. 4. 5. 최종접속>

완성품 업체만을 상대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가” 등에 관한 쟁점을 질의(referral)하였다.³⁷⁾ 이 질의에 대해 CJEU의 판단이 주목되었으나, 2021년 6월 노키아와 다임러가 전격 합의에 이르러 모든 소송을 철회하면서 분쟁은 종결됐다.³⁸⁾ 이 사건을 통해 자동차 분야 역시 표준특허 라이선스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동시에, FRAND 라이선스의 로열티 산정의 기초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판매되는 최종제품 전체를 산정의 기초로 해야 하는지(EMV 방식),³⁹⁾ 해당 표준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최소 판매단위의 부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SSPPU 방식)⁴⁰⁾ 이슈가 부각되었다.⁴¹⁾

나. 샤프 대 테슬라 사건(Sharp v. Tesla)

이 사건은 일본 전자기업 샤프가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다. 샤프는 테슬라 차량 내 통신 모듈이 자사 보유의 이동통신(3G/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2020년 3월 동경지방법원에 테슬라 일본법인을 상대로 수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델 S, 모델 3, 모델 X 등 테슬라 주요 차량의 내장 통신장비가 샤프의 특허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⁴²⁾ 이 소송은 표준특허에 따른 일본 내 수입금지를 구한 첫 자동차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이후 샤프는 독일에서도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기에 노키아, 컨버센트 등 다른 SEP 보유자들도 테슬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였다. 이에 테슬라는 2021년 Avanci의 SEP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다수 특허권자와 일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사들뿐 아니라 전

37) <https://www.juve-patent.com/cases/nokia-and-daimler-settle-all-global-litigation-in-connected-cars-dispute/> <2025. 4. 5. 최종접속>

38) 양사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업계에서는 다임러가 노키아에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고, 부품사에 대한 서브 라이선스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후 노키아는 Audi, VW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도 협상을 통해 Avanci(자동차용 특허풀)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맺게 되었고, 자동차 업계와 통신 특허권자들 간의 이해관계는 재조정되었다.

39) Entire Market Value의 약자

40) 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ing Unit의 약자

41) 표준화 기구인 IEEE는 과거 SSPPU를 기본적인 로열티 기준으로 제안했으나, 최근 변경된 정책에서는 시장 가치 기반의 접근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법원 역시 SSPPU 방식을 기본적으로 선호하지만, 표준기술이 최종제품의 수요를 주도하는 특정 조건하에 EMV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

42) 2020.3.19.자 Reuters News, <https://www.reuters.com/article/business/japans-sharp-sues-tesla-for-patent-infringement-over-network-gear-source-idUSKBN2151X3/> <2025. 4. 5. 최종접속>

기차 제조사 역시 SEP 라이선스 분쟁을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3. 소결

통신 분야 분쟁 사례들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제품이 여러 나라에서 거래되므로 SEP 라이선스 분쟁은 필연적으로 다국적 소송으로 발전하게 되고, 법원 간의 재판권 관할 분쟁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준특허 보유 기업이라도 FRAND 라이선스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표준특허를 실시하는 기업이 정당한 라이선스를 회피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과 사업 차질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또한 표준특허 보유기업군(Nokia, Ericsson 등)과 실시기업군(Apple, Samsung, Huawei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라이선스 합의에 이르는 협상 과정에서 소송 이외에 크로스 라이선스, 특허풀, 반독점법 규제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의 분쟁 사례들은 통신과 자동차 등 이중 산업이 융합되면서, 그동안 통신표준 특허와 거리가 있었던 기업들도 새로운 SEP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체들은 SEP 라이선스 문제를 공급망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형성하거나, Avanci 등의 특허풀에 단체로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⁴³⁾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통신 분야와 달리 개별 소송보다는 협상 메커니즘을 통해 SEP 이슈를 해결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표준특허를 이용하는 기업은 설령 해당 분야에서 특허 포트폴리오에 있어 열세에 있더라도 라이선스 협상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새로이 융복합 기술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은 전략적으로 해당 분야의 표준특허 지형을 익히고 대응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IV. 주요 각국의 표준특허 관련

판결과 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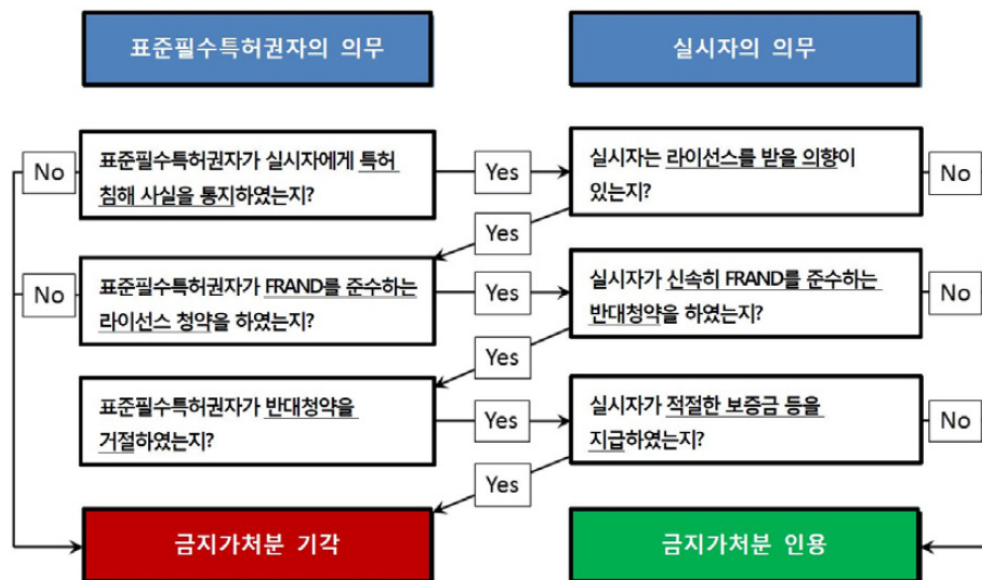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에 대한 접근은 각 국가의 법체계와 정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미국, 중국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고 나름의 정책을 수립하여 국제적 분쟁에 대한 각각의 판단 기준을 내놓고 있어 그 동향과 국제통상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43) <https://www.avanci.com/2022/08/25/avanci-signs-agreements-with-hyundai-and-kia/><2025. 4. 5. 최종접속>; 2019년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Avanci의 2G/3G/4G 통신특허 일괄 라이선스를 맺었고, 2022년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도 Avanci에 가입하여 4G LTE 차량 특허에 대한 포괄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2023년에는 Avanci가 5G 차량용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고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이 참여하였다.

1. 유럽연합(EU)

EU에서는 2015년 *Huawei v. ZTE* 사건의 선결적 쟁점에 대한 CJEU의 판결⁴⁴⁾을 통해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SEP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이 제시된 바 있다. 이 판결에서 CJEU는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경쟁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특허권자와 실시의향을 가진 자가 따라야 할 FRAND 협상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SEP 보유자는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 상대방에게 표준특허 및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라이선스 협상 요청을 해야 하며, (ii) 실시의향을 가진 자가 이에 응해오면 (iii) 특허권자는 구체적 FRAND 조건의 라이선스 청약(offer)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iv) 실시자는 특허권자의 제안에 신속히 성실한 답변을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응하여 FRAND 조건 제안(counter-offer)을 해야 한다.



[그림 2] Huawei Choreography

이러한 “Huawei 절차 도표”(그림2)⁴⁵⁾을 충실히 반영했는지가 유럽 법원에서 표준

특허에 기한 금지명령(금지가처분 포함) 허용 여부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이 기준에

44)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은 Peter D. Camesasca·최지원,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점 : *Huawei v. ZTE* (Case C-170/13)”, 경쟁저널 통권 182호(2015.9), 30-35면.

45) 그림의 출처는 임지영, “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 - *Huawei v. ZTE* 판결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4권 제3호(통권 제76호), 33

입각하여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협상 태도를 심리하여 어느 쪽이 교섭을 지연하거나 불성실했는지에 따라 금지명령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EU에서는 FRAND 분쟁이 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TFEU 조항 102조)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검토되어 왔다. 2014년 EU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표준특허권 행사 사건을 조사하여, FRAND 확약을 한 표준특허에 근거하여 경쟁사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될 수 있음을 예비 판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실시 의사가 있는”(willing) 상대방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명령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자리 잡았고, 이는 EU에 속한 각국에서 2015년 Huawei v. ZTE 사건의 판결과 함께 지켜야 할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나아가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11월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정책적 권고안을 발표하고 표준특허 공개의 투명성 제고, FRAND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일반원칙, 표준특허에 대한 예측 가능한 권리집

행 환경 조성 등을 다루고 있다.⁴⁶⁾ 2023년 4월 SEP 투명성과 중재절차 도입 등을 담은 EU의 SEP 규정(regulation) 초안이 공개되었으나, 업계 찬반과 과잉규제 논란이 있어 2023년 말에 일단 철회된 상태이다.⁴⁷⁾ 요컨대 EU에서는 경쟁당국(집행위원회)과 사법부(CJEU)가 모두 SEP 보유자의 FRAND 준수를 강조하면서, 라이선스 협상에 응하려는 실시자를 상대로 한 과도한 권리행사를 견제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2. 독일

Huawei 판결 이후 독일 법원들은 종전보다 더 FRAND 협상 절차를 고려하게 되었고, Huawei 판시 절차와 관련하여 독일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최초의 청약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과 그 목적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해 왔다. 또한 독일 법원은 실시자의 성실한 응답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최초 청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연관되며, 당사자들의 FRAND 조건 준수

면; 이를 “Huawei Choreography”라고 하는데, 실시자의 마지막 단계의 조치로 (v)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위반대청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만일 실시자가 라이선스 협정 체결 전에도 당해 표준필수특허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실시로 지급을 위한 적절한 보증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46) 박윤석, “표준필수특허소송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고찰 - 독일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통권 165호), 2018, 178-179면.

47) <https://ipwatchdog.com/2025/02/12/ip-stakeholders-cheer-withdrawal-eu-sep-proposal/id=186010/><2025. 4. 5. 최종 접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독일 법원은 비차별적이고 상관습을 준수하는 청약 또는 반대청약의 경우 FRAND 조건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보인다.⁴⁸⁾ 최근 중요한 판례로 2020년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Sisvel v. Haier* 판결⁴⁹⁾이 나오게 된다.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실시자(피고)는 실시의향이 있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라이선스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⁵⁰⁾ 이 사건에서 Haier이 수개월간 협상을 지연하고 특허 유효성에 조건을 거는 행태는 협상의 진정성 결여로 실시자의 전략적 지연(hold-out)으로 보아 결국 Sisvel의 금지명령 청구는 인용되었다.

독일은 중국 등에서 내려진 제소금지명령(ASI)에 적극 대응하여, 반(反)제소금지명령(AASI)을 독일 내 새로운 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키아 대 다임러 분쟁에서, 다임러 부품사인 콘티넨탈이 노키아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며 독일소송의 중단

을 노렸을 때, 뮌헨법원은 독일 재판 주권을 침해한다며 노키아 측에 유리한 AASI를 발령해 이를 저지한 바 있다.⁵¹⁾ 이어 *InterDigital v. Xiaomi*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중국 우한법원이 샤오미를 위해 전세계 FRAND 실시료를 결정시까지 모든 해외소송 금지(ASI)를 명령하였으나, 뮌헨법원은 샤오미를 대상으로 해당 ASI의 집행금지명령(AASI)을 내렸고, 2021년 1월 판결에서 “피고가 다른 관할권에서 ASI를 요청한 것은 피고가 FRAND 협상에 비협조적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⁵²⁾ 독일에서는 ASI 시도가 자체로 FRAND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피고가 금지명령을 피할 수 있는 항변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독일은 202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금지명령 청구 시 비례의 원칙을 도입하였고, 이는 특허권 행사가 경제적 실효성이나 제3자에 과도한 피해를 줄 경우 법원이 금지명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³⁾

48) 임지영, 위의 논문, 40면.

49) Case No. KZR 36/17

50) <https://www.mewburn.com/news-insights/landmark-judgement-in-german-frand-case-sisvel-vs.-haier> <2025. 4. 5. 최종접속>

51) <https://www.taylorwessing.com/en/insights-and-events/insights/2020/06/nokia-v-continental---munich-higher-regional-court> <2025. 4. 5. 최종접속>

52)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4e3947d-80c9-4ec1-889d-5e153b444097>

53) 실제로 2021년 이후 독일 법원은 여전히 금지명령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발령하고 있고 개정 도입된 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는 드물다.

3. 영국

2017년 Unwired Planet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영국 법원은 소송을 통해 FRAND 조건을 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2020년 8월 영국 대법원은 Unwired Planet v. Huawei 항소심이 내린 영국 법원의 국제적 관할권과 글로벌 라이선스 강제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⁵⁴⁾ 이 판결에 의하면 SEP 보유자가 전 세계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해 FRAND 조건의 라이선스를 제안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피고는 전세계 라이선스를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국 내 금지명령을 감수해야 한다. 위와 같은 영국의 판결은 글로벌 표준특허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하나의 국가 법원이 관련된 모든 국가의 표준특허를 포괄하는 글로벌 라이선스를 판단하여 분쟁을 일괄 해결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특허권자 측은 영국 법원의 관할권을 활용하여 글로벌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전략을 취할 수

있고, 반대로 피고 측은 영국에서 패소할 경우 전 세계 특허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졌다.

이는 Optis v. Apple 사건에서 현실화되어 Optis는 애플을 상대로 영국 법원에 SEP 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영국 법원은 1심에서 애플이 법원이 정한 FRAND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영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았고, 애플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2022년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FRAND 조건 결정 수용의무가 인정된 바 있다.⁵⁵⁾ 이 사건은 현재 영국 대법원에 계속되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CMA)은 2020년 EU 탈퇴 이후 독자적으로 SEP 이슈를 검토하였으나, 표준특허권자의 특허침해소송을 두고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으며, 전반적으로 영국 법원의 FRAND 라이선스에 관한 판단⁵⁶⁾을 존중하고 있다.

54) UKSC-2018-0214, <https://www.supremecourt.uk/cases/uksc-2018-0214> <2025. 4. 3. 최종접속>

55) Optis v Apple [2022] EWCA Civ 1411; 항소심이 판단한 Optis와 애플 간의 FRAND 조건은 애플이 Optis에게 연간 5.13백만 달러를 5년간 지불하는 조건이며, 과거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30.78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56) Unwired Planet 판결에서 법원은 FRAND에 부합하는 단일 실시료 비율(single royalty rate)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FRAND 조건은 범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법원의 사후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이와 일치하지 않는 표준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제안이 경쟁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이용자에게 제시한 FRAND조건(실시료 조건)은 FRAND에 부합하는 영역, FRAND 위반의 영역, 경쟁법 위반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같은 취지로 박윤석, 위의 논문, 173면).

4. 미국

미국에서는 SEP 관련 분쟁이 계약법, 특허법과 함께 반독점법 영역 모두에서 다뤄져왔다. 대표적으로 퀄컴(Qualcomm)을 상대로 한 일련의 소송을 들 수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7년 퀄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여 퀄컴의 라이선싱 정책이 칩셋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⁵⁷⁾ 2019년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퀄컴이 표준화 기구에 약속한 FRAND 의무를 저버리고, 칩을 팔 때 ‘라이선스 없이는 칩 공급 안 함(no license, no chips)’ 전략으로 휴대폰 제조사를 압박하여 경쟁사를 배제했다고 보아 퀄컴에 광범위한 시정명령(경쟁사에 라이선스 제공, 특정 계약조건 금지 등)을 내렸다.⁵⁸⁾ 그러나 2020년 미국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설령 퀄컴이 FRAND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법/특허법상 문제일 뿐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⁵⁹⁾ 퀄컴의 행위를 공격적 사업전략(hyper-competitive)일 수는 있어도

위법한 독점력 남용(anti-competitive)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⁶⁰⁾

미국은 특허권자의 금지명령 청구에 대해서 2006년 eBay 판결 이후 특허에 적용되는 영구금지명령 발령을 위한 4요소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표준특허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금지명령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표준특허 분쟁에 있어 법원은 FRAND 라이선스 관련 당사자 간 계약 해석에 중점을 둔 접근을 취하고 있으면 반독점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의 미국 법원에서 SEP 보유자의 FRAND 확약을 계약적 의무로 인정하고, 실시자의 표준특허 이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FRAND 실시료를 결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다. 예컨대 2013년 서부 워싱턴주 연방지방법원은 Microsoft v. Motorola 사건⁶¹⁾에서 모토로라의 FRAND 의무를 분석하여 재판부는 FRAND 로열티율을 산정한 바 있다. 2017년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TCL v. Ericsson 사건⁶²⁾에서도 FRAND 요율 산정을 시도하였

57) Complaint, FTC v. Qualcomm, Inc., No. 5:17-cv-00220 (N.D. Cal. Jan. 17, 2017)

58)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FTC v. Qualcomm, Inc., No. 17-CV-00220-LHK (N.D. Cal. May 21, 2019)

59) FTC v. Qualcomm Inc., D.C. No. 19-16122 at 55 (9th Cir. Aug. 11, 2020)

60) <https://www.skadden.com/insights/publications/2020/08/ninth-circuit-strikes-down-sweeping-injunction> <2025. 4. 5. 최종접속>

61) 2013 WL 2111217 (2013)

62) Case 8:14-cv-00341-JVS-DFM

고, 전체 표준특허폴 대비 에릭슨 특허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톱-다운(top-down) 방식을 활용하여, TCL이 에릭슨에 지불해야 할 전세계 휴대폰 판매대수 기준 로열티율을 판결로 정한 바 있다.⁶³⁾

미국은 통상정책 면에서도 SEP 이슈를 다루는데, 2013년 애플 제품에 대한 삼성의 ITC 승소시 ITC의 SEP 침해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결정에 대하여 미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도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FRAND 약정이 있는 SEP에 기초한 ITC 수입금지 명령은 공익에 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후로 ITC에서도 SEP 관련 사건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⁶⁴⁾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DOJ)는 FRAND 분쟁은 사적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특허권자의 정당한 구제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의 입장이

현재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지에 대해 향후 주시할 필요가 있다.⁶⁵⁾

5. 중국

중국은 2010년대 후반부터 SEP 분쟁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과거에는 자국 제조업체들이 주로 피고였으나, 화웨이 등의 부상으로 중국은 SEP 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⁶⁶⁾는 2015년 반독점법(AML)을 위반한 쉐컴에 약 60.88억 위안(약1조613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며 SEP 라이선스 조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당시에 쉐컴이 각국에서 받은 제재 중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⁶⁷⁾ 최근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용하여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이익을

63) 이에 대해 2019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배심 재판을 통해야 할 사안을 판사가 판결했다”는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1심 판결을 무효화하였고, 이 사건은 결국 양측의 별도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FRAND 조건을 법원이 직접 결정함에는 한계가 있고 배심재판의 불확실성도 존재하여 미국의 글로벌 FRAND 요율에 관한 판결은 영국만큼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

64) FRAND 분쟁은 ITC의 수입금지명령과 같은 무역통상 행정절차와 관련되어 국내 경쟁질서 및 소비자 후생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및 외국 소비자 후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65) 2025. 1. 21.자 China Briefing, US-China Relations in the Trump 2.0 Era: A Timeline, <https://www.china-briefing.com/news/us-china-relations-in-the-trump-2-0-implications/> <2025. 4. 5. 최종접속>

66) 종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권한을 이어받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현재 반독점법(AML)에 의거하여 SEP 라이선스의 경쟁제한성을 감시하고 있다.

67) 2015. 2. 10.자 연합뉴스, 중국, 쉐컴에 1조 600억 원 벌금…사상 최다액, <https://www.yna.co.kr/view/AKR20150210135800083> <2025. 4. 5. 최종접속>

위해하는 경우 국무원 유관 부분은 중국의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등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 배제하거나 불공정 경쟁행위를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국의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함을 명시하였다.⁶⁸⁾

중국 법원 차원에서는 2017년부터 중국 법원들이 FRAND 관련 소송에서 적극적 판결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화웨이 대 컨버센트 사건으로, 2019년 1심에서 중국 난징중급법원은 화웨이와 컨버센트 간 중국 내 제품에 대한 FRAND 로열티율을 직접 결정하였고, 이어 2020년 최고인민법원은 이 분쟁에서 ASI를 최초로 발령하였다.⁶⁹⁾ 중국 법원들은 이후에도 InterDigital v. Xiaomi 사건, OPPO v. Nokia 사건 등에서 ASI를 발령하여 외국 법원의 진행을 막는 공격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 법원이 FRAND 분쟁의 포럼으로서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⁷⁰⁾ 나아가 중국은 202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 남용으로 시장경쟁에 해

를 끼치는 경우에 법원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SEP 라이선싱 문제에 관하여 반독점법(AML) 이외에 특허법 차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중국은 중국 법원이 표준특허 분쟁에 있어 글로벌 FRAND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ASI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는 IP 분쟁에서 중국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국제 분쟁 절차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⁷¹⁾ 다만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방국가들로부터 불투명하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⁷²⁾ 현재 진행 중인 미국-중국 간 관세통상 분쟁의 전개에 있어서 향후 중국 법원의 미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FRAND 판결에 관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68)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제17조(2025. 5. 1. 시행 예정)

69) <https://en.kangxin.com/html/2/215/217/14469.html> <2025. 4. 5. 최종접속>

70) <https://www.juve-patent.com/legal-commentary/china-wakes-up-in-global-sep-litigation/> <2025. 4. 5. 최종접속>

71) 2025. 5. 7.자 법률신문, 중국, 국제 IP분쟁 해결지로 부상, <https://www.lawtimes.co.kr/news/207779> <2025. 5. 10. 최종접속>; 외국 원고의 승소율은 77%, 중국 원고는 74%로 국적에 따른 승소율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 평균 심리 기간은 73일이었다.

72) Amicus Brief by Adam Mossoff in Ericsson v. Samsung (Fed. Cir., April 9, 2021)

V. 결론

국제적인 SEP 분쟁 사례를 종합하면, FRAND 조건의 해석과 이행, 금지명령 남용에 대한 제한, 국제재판 관할권의 충돌(ASI/AASI)⁷³⁾, 반독점법의 적용 등이 핵심적인 법적 쟁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WTO/TRIPS 이사회나 OECD,⁷⁴⁾ WIPO 차원에서 SEP와 FRAND가 의제로 빈번하게 다루어져 향후 국제적인 표준특허 관련 규범(가이드라인 포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단기간 내 글로벌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워 당분간은 주요 국가별 판결 및 정책 동향을 염두하여 표준특허 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에 있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

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

FRAND 라이선스 문제는 국제통상 규범 체제에서 무역기술장벽⁷⁵⁾과도 관련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특허청의 IP정책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정책을 통해 표준특허권의 행사 문제와 분쟁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향후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차원의 추가적 대응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내지 한국기술표준원 같은 산하기관 등을 통해 표준필수특허 관련 국제 협력과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기업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반영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를 들

73) 소송금지명령에 대한 대표적 국내 연구로 이창현,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경인문화사, 2021; ASI에 대한 각국의 대체적 입장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다. “소송금지명령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체적인 입장은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양분되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나 대륙법계 국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법계의 차이에 따른 상반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최근의 국제적 흐름은 최소한 분쟁해결합의를 위반한 외국 제소에 대해서만큼은 중재절차 또는 자국 법원의 관할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송금지명령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에 의해 임시적 처분이나 긴급조치의 형태로 소송금지 임시적 처분이 발령되는 사례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고..(중략)”(위의 책 150-151면).

74) OECD 경쟁위원회는 SEP 라이선싱과 경쟁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와 공론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OECD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여러 회원국이 SEP 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명확한 FRAND 규칙 부재 시 국가 간 판정 경쟁이 벌어질 우려와 표준특허는 시장지배력 추정을 동반하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OECD는 각국에 균형 잡힌 집행을 권고하면서도, SEP-FRAND 문제에 대해 정보교환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OECD, Licensing of IP Rights and Competition Law, DAF/COMP(2019)3).

75) 안덕근,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박영사, 2018, 10-15면; WTO협정 중 TBT협정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다자간 무역질서 뿐만 아니라 양자간 FTA에 있어서도 TBT 관련 기본 규범들이 마련되어 있다.

어 EU의 SEP 규제안이나 미국 표준특허 정책 성명,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하여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양자/다자간 통상협의 과정에서 표준특허 분야 FRAND 원칙의 상호 준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FTA 협정에 있어 표준특허 조항을 두어 투명하고 공정한 SEP 라이선싱 절차를 상호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또한 WIPO 등 국제기구 논의에서 국제적인 표준특허 분쟁 조정기구 신설이나 국가 간 판결 상호인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제안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SEP 소송에 직면할 경우 정부가 외교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원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⁷⁶⁾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표준특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표준특허 분쟁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여, 통신·자동차 등 업계의 의

견을 수렴하고 해외 동향을 전파하며, 필요시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외 NPE들이 한국 기업을 표준특허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국내 기업 간 방어연합(Defense Pool)을 구축하거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산업계 연합이 공동으로 NPE의 SEP 라이선스 요구를 협상하거나, NPE의 특허를 역으로 인수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교섭력 불균형의 격차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표준특허 관련 국내 법령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까지 SEP 자체에 대한 특별한 입법을 한 바 없었다.⁷⁷⁾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특허와 관련하여 2014년 12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FRAND 의무의 본질이 성실한 협상의무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표준필수특허(SEPs)와 관

76) 실제로 2019년 삼성-화웨이 분쟁 당시 정부 차원에서 한중 통상장관회의 등을 통해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중국 법원의 ASI 남용 등으로 한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침해되는 경우, 정부가 외교 경로로 중국 당국과 협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촉구할 수 있다. 미 ITC 등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가 논의될 때도 정부 의견서(amicus brief) 제출이나 USTR 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77) 다른 아시아 국가(인도, 대만, 일본)의 경쟁당국의 법 집행과 지침에 대해서는 Jorge L. Contreras/정재권 譯, “국제표준전쟁: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 Law & Technology(제15권 제3호, 통권 81호), 2019, 73-75면; 2018년 6월 일본 특허청(JPO)은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협상 관련 지침”을 통해 FRAND 실시허락을 위한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단계들을 요약하고 있다.

런된 조치를 하였다.⁷⁸⁾ 향후 국제 동향을 주시하여 법원에 FRAND 조건 권한을 명시하는 방안이나,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을 전담하는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표준특허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를 확대하고,⁷⁹⁾ 궁극적으로는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기업 차원의 분쟁 대응 방안⁸⁰⁾

가. 표준화 전략 및 초기 협상

무엇보다 표준화 과정에 초기부터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성, LG 등 IT 기업들은 3GPP, ETSI, IEEE 등의 표준화 기구 활동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 현대차도 5G AA, C-V2X 등 표준단체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표준 제정 회의에서 경쟁사 특허가 제안될 때, 가능하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특허 회피 설계를 유도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동시에 자사 특허를 가능

한 많이 표준에 포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협상(early negotiation)을 통한 분쟁 예방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일단 표준이 완성되고 제품이 출시되면 SEP 보유자는 언제든지 소송을 걸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라이선스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업들 간에는 표준특허 풀이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MPEG LA, AVANCI 등의 특허풀은 다수 특허권자와 다수 제조사가 일괄계약을 맺어 소송을 피하도록 돕는다. 한국 기업들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풀 라이선스를 적극 검토하고, 풀에 없는 특허권자와는 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협상에서는 해당 표준특허의 유효성과 필수성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가 정말 표준에 필수인지, 회피 설계 가능성은 없는지, 무효 가능성은 없는지 분석하여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⁸¹⁾ 필요하다면 라이선스 협상과 병행하여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78) 이후 2016년 개정을 거쳐 SEP와 사실상의 SEP(de facto SEPs)를 명확히 구분하고, SEP 보유자가 라이선스를 거부하는 경우의 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 등이 추가되었다(최승재, 『표준필수특허와 법』, 박영사, 2021, 202-204면).

79) 아울러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침해금지가처분이 빈번하게 신청되고 그와 관련하여 anti-suit injunction이나 anti-anti-suit injunction이 발령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도 특허법원 등의 국제 허브코트화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소송금지명령 또는 소송금지가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같은 취지, 이창현, 위의 책, 458면).

80) <https://patentskart.com/how-to-avoid-standard-essential-patents-litigation/> <2025. 4. 5. 최종접속>

나. 글로벌 포트폴리오 관리

표준특허 분쟁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어 수단은 강력한 표준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R&D 투자를 통해 핵심 표준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필요시 외부에서 전략 특허를 매입하여 포트폴리오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는 과거 모토로라로부터 대량의 통신 특허를 인수하고, LG전자가 휴대폰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나온 특허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NPE가 아닌 권리자와는 교차 라이선스(cross license)를 통해 분쟁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국제적 분산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특허를 본국에만 출원하면 해외 소송 시 영향력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표준 기술에 대해 미국, 유럽, 중국 등에 고르게 특허를 확보하여, 어느 법원에서든 해당 법정지에서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⁸²⁾

나아가, 특허풀이나 공동라이선스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관리의 일

환이다. 특허권자로서 자신의 SEP를 풀에 넣으면 일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올리면서 개별 소송의 수고를 덜 수 있다. 예를 들어 LG전자는 영상압축 표준특허를 MPEG-LA 풀에 넣어 로열티를 받아왔다. 반대로 실시업체로서 특허풀의 라이선스를 받으면 개별 소송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대차의 Avanci 가입이 그 예이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표준특허 외의 방어특허 확보이다.⁸³⁾ 상대방 SEP에 직접 대응할 만한 SEP를 못 가졌다면, 표준과는 별개이지만 상대 제품에 일반 특허⁸⁴⁾를 대항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교육

기업들의 표준특허 관련 내부 정책 기준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먼저 신사업 진출 또는 신기술 도입 시 표준특허 리스크 점검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5G, 와이파이 등 통신 모듈을 장착할 경우, 관련 표준특허가 어떤 기업들에게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출시 전에 라

81) 참고로 일본 특허청(JPO)은 라이선스 협상 등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2018년 4월부터 ‘표준특허의 필수성 판단에 대한 판정(Advisory Opinion)’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82) 실제로 화웨이 대 삼성 사건에서 화웨이는 중국에서, 삼성은 미국에서 상대방 특허를 고소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지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83) 이를 ‘포트폴리오 믹스’ 전략이라고도 부른다.

84) 예컨대 디자인, UI, 반도체공정 등에서 상대가 침해하는 특허를 발견해 맞소송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선스 계약 체결이나 특허 풀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사내 IP 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표준특허 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 대응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 분쟁은 기술팀, 법무팀, 경영진의 협업이 필수이므로, 부서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외부 특허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최신 동향 정보를 얻고, 임직원 대상 표준특허 및 FRAND 교육을 실시해 전사적 대응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표준화 관련 담당 인력이 국제회의에서 특허 공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한 발언으로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사와 기술협력(MOU 등)을 맺을 때 표준특허 관련 약정도 미리 포함하여 관련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3. 시사점과 향후 과제

최근 중국이 SEP 분쟁의 핵심 법정지로 부각되면서, 중국 법원은 자국에서 진행되는 SEP 소송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법원의

관련 소송을 중지시키는 ASI(Anti-suit injunction) 명령을 내리거나, 전 세계 FRAND 판정을 통해 자국 기업에게 유리한 낮은 로열티율을 책정하는 등의 행태로 유럽·미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FRAND 분쟁이 한 국가의 사법 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통상 분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자국 제조업 보호와 기술 자립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는데, EU는 중국 법원이 유럽 특허에 대해 함부로 전세계적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WTO 협정상의 내국민 대우(NT),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WTO 분쟁 등으로 중국의 SEP 정책이 국제적으로 검증될 것으로 예상된다.⁸⁵⁾ 이러한 WTO 분쟁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이 국제통상 규범과 충돌할 경우 어떤 규범적 기준이 적용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국제통상 차원에서 SEP 보유자의 권리행사가 과연 무역 제한적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WTO의

85) 2025년 1월, EU는 중국의 법원들이 비중국 SEP에 대한 글로벌 로열티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관행에 대해 WTO에서 협상을 요청했다. 이는 EU 기업들이 글로벌 로열티율을 낮추도록 압박하고, 중국 제조업체가 유럽 기술에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WTO 규정과 TRIPS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2025. 3. 31.자 Kluwer Patent Blog, The WTO dispute between China and EU over Chinese SEPs global rate-setting, <https://patentblog.kluweriplaw.com/2025/03/31/the-wto-dispute-between-china-and-eu-over-chinese-seps-global-rate-setting/> <2025. 4. 5. 최종접속>).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은 특허권 행사를 각국 재량에 맡기지만, 자의적인 차별 또는 변장된 무역 제한을 금하고 있다.⁸⁶⁾ 만약 한 국가의 법원이 자국 기업에만 유리하게 FRAND 기준을 적용하여 해외 특허권자의 권리와 기술을 저평가하거나, 반대로 자국 SEP 보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옹호해 사실상 외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면 이는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법원이 책정한 현저히 낮은 로열티율이 해외 기업에 불리한 차별로 간주될 여지가 있고, EU나 미국이 이에 대응하고자 자신들의 재판관할 권역에서 높은 로열티율을 부과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우리 기업들은 표준특허 분쟁의 주요 당사자가 되었고 향후에도 잠재적인 당사자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 모두 능동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통상협상과 국제규범 형성에 참여하여 공정한 FRAND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표준화 단계에서부터 특허전략을 긴밀히 연계하고, 협상력 확보

를 위한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도 성실한 대응으로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분쟁이 현실화된 경우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최종 판결이 FRAND 조건을 일률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최선인 경우가 많다. 판결이 임박해 오더라도 소송 계속 중 조정, 화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율적 해결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최근에는 중립적 제3의 기관이나 중재인에 글로벌 FRAND 라이선스 결정을 맡기는 방법도 대안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명되고 있다.⁸⁷⁾

지금까지 표준특허 라이선스의 개요와 국제적 분쟁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에 진행된 분쟁 사례들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분쟁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ICT를 중심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 전반에 표준기술이 확산되면서, SEP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FRAND 라이선스는 SEP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지만, 구체적인 이행과 해석을 둘러싸고 여전히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

86) TRIPS 협정 제27.1조

87) 예를 들어 ICC 중재나 WIPO 중재센터 등을 활용하여 전 세계시장에서의 유효한 FRAND 라이선스를 확정하는 것이다. 최근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에 의해 임시적 처분의 형태로 소송금지처분이 발령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러한 쟁점에 대한 중재법적 검토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제2개정판), 박영사, 2025. 456-481면).

다. 향후 표준특허 분쟁은 6G, 인공지능(AI), IoT,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AI 기술 표준의 SEP 라이선스에 대한 FRAND 적용, 표준특허와 데이터 권리의 충돌 등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련의 국제 표준특허 관련 분쟁 사례들은 단순한 FRAND 라이선스 판단 기준에서 더 나아가 각국의 사법 관할권 경쟁과 반독점법 위반, 비관세

무역장벽 이슈까지 포괄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FRAND 원칙의 본질, 즉 혁신 장려와 기술 접근성 간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FRAND 라이선스 분쟁은 국제통상 규범과도 관련성을 가지므로 국가 간 사법부의 판단과 로열티 수준의 불일치가 기업 활동과 무역에 저해요소가 되지는 않는지 이를 조율할 국제협력과 다자 차원의 규범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⁸⁸⁾

88) 가령 WTO에서 FRAND 분쟁 조정 메커니즘의 수렴을 논의하거나, OECD를 통한 FRAND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김성기, “표준특허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 영국의 Unwired Planet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Vol.67), 2021.4.

_____, “표준특허의 FRAND 확약 위반에 대한 계약법적 검토, 산업재산권(Vol.77), 2024.4.

김수철, 『특허라이선스 계약실무』, 한국재식재산연구원, 2017.

나지원, “FRAND 확약의 계약적 효력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제13권 제3호 (통권 제69호), 2017.5.

_____,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경인문화사, 2018.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제2개정판), 박영사, 2025.

박윤석, “표준필수특허소송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고찰 -독일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통권 165호), 2018.

안덕근,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박영사, 2018.

양효령,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2024년 중국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논총(제44권 제3호), 2024.

이창현,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경인문화사, 2021

임지영, “표준필수특허(SEP)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가처분 관련 EU 개별국 판례 동향 - Huawei v. ZTE 판결 이전과 이후를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14권 제3호(통권 제76호), 2018.5.

Jorge L. Contreras/정재권 譯, “국제표준전쟁: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 Law & Technology(제15권 제3호, 통권 81호), 2019.

최승재, 『표준필수특허와 법』, 박영사, 2021.

특허청,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 2020.

_____,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2021.

2. 외국문헌

Herbert Hovenkamp, FRAND and Antitrust, 105 Cornell L. Rev. 1683 (2020)

ISO/IEC Guide 2:2004

Igor Nikolic, Licensing standard essential patents: FRAND and the internet of things, London: Hart Publishing, 2021.

Jorge L. Contreras, A Brief History of FRAND: Analyzing Current Debates in Standard Setting and Antitrust Through a Historical Lens (January 15, 2015). 80 Antitrust Law Journal 39 (2015), American University, WCL Research Paper No. 2014-18.

OECD, Licensing of IP Rights and Competition Law, DAF/COMP(2019)3

Rudi Bekkers, Elena M. Tur, Joachim Henkel, Tommy van der Vorst, Menno Driesse, Jorge L. Contreras, Overcoming inefficiencies in patent licensing: A method to assess patent essentiality for technical standards, Research Policy 51 (2022) 104590

Mark A. Lemle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April 1, 2002). 90 California Law Review 1889 (2002), UC Berkeley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84.

Wentong Zheng, Jurisdictional Competition on Standard-Essential Patents, 14 N.Y.U. J. INTELL. PROP. & ENT. L. 1. (fall 2024)

3. 기타 자료 및 기사

EU 집행위원회 결정(Case AT.39939 - Samsung - Enforcement of UMTS standard essential patents)

대한변협신문(2013. 4.~ 2013. 6.), 글로벌 특허전쟁 관전기(1)~(5)

2024.12.1.자 특허뉴스, 사물인터넷 표준특허 출원 급증, 한국이 '선도',
<https://www.e-patentnews.com/12106>

2019.10.7.자 오토저널, 자율주행차 분야 표준특허 현황, <https://v.daum.net/v/NYTj72b261>

2024.7.10.자 특허뉴스, 친환경자동차 기술 · 표준특허를 위한 지속적인 R&D 투자 필요,
<https://www.e-patentnews.com/11529>

2018.6.27.자 CNET News,
<https://www.cnet.com/tech/mobile/apple-and-samsung-finally-settle-their-patent-dispute/>

2019.2.27.자 Reuters News,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huawei-samsung-agree-to-settle-patent-dispute-in-us-court-idUSKCN1QG10Y/>

2019.4.16.자 CNET News,
<https://www.cnet.com/tech/mobile/apple-and-qualcomm-settle-heres-what-it-means-for-your-next-iphone/>

2021.5.7.자 매일경제 기사, 삼성-에릭슨 5G 특허 분쟁 종료,
<https://www.mk.co.kr/news/business/9862284>

2021.1.22.자 지식재산뉴스, 표준특허의 실시권 재판의 관할권 확대,
<http://kpaanews.or.kr/news/view.html?section=86&category=88&no=4751>

2020.3.19.자 Reuters News,
<https://www.reuters.com/article/business/japans-sharp-sues-tesla-for-patent-infringement-over-network-gear-source-idUSKBN2151X3/>

2025.1.21.자 China Briefing, US-China Relations in the Trump 2.0 Era: A Timeline,
<https://www.china-briefing.com/news/us-china-relations-in-the-trump-2-0-implications/>

2015.2.10.자 연합뉴스, 중국, 퀄컴에 1조 600억 원 벌금…사상 최대액,
<https://www.yna.co.kr/view/AKR20150210135800083>

2025.3.31.자 Kluwer Patent Blog, The WTO dispute between China and EU over Chinese SEPs global rate-setting, <https://patentblog.kluweriplaw.com/2025/03/31/the-wto-dispute-between-china-and-eu-over-chinese-seps-global-rate-setting/>

2025.5.7.자 법률신문, 중국, 국제 IP분쟁 해결지로 부상,
<https://www.lawtimes.co.kr/news/207779> <2025. 5. 10. 최종접속> 등

[국문초록]

표준특허 분야 국제 라이선스 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나지원

표준특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표준화기구(SDO)가 제정한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로,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실행할 수 없는 특허를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특허는 기술의 호환성을 높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표준화기구는 표준특허권자에게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요구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락하도록 하고 있다. FRAND 확약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표준기술의 폭넓은 확산과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국제적인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각국의 판결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통신과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의 주요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정책과 법적 접근 방식도 비교 분석하였다. EU는 2015년 Huawei v. ZTE 판결을 통해 표준특허권자의 금지명령 청구를 제한하는 당사자 간 협상 절차를 제시하였고, 최근에는 SEP 라이선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Huawei 판결 이후 협상 과정에서의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연방대법원은 Sisvel v. Haier 사건에서 실시자의 협상 지연 행위를 전략적 지연(hold-out)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법원은 중국 법원의 제소금지명령(ASI)에 대응하여 반제소금지명령(AASI)을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관할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영국 법원은 Unwired Planet v. Huawei 사건을 통해 글로벌 FRAND 조건 결정 권한을 인정하여 국제적 표준특허 분쟁의 중요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미국은 반독점법보다는 계약법적 접근을 중시하여 FRAND 조건 위반을 당사자 간 사적 해결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ASI를 발령하며 글로벌 로열티 결정권을 주장하는 등 공격적인 관할권 확장을 꾀하고 있다. 표준특허 분쟁은 점차 국제통상 규범과 충돌하고 쟁점도 발생하고 있다.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언한다. 먼저 정부

는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을 국제통상 이슈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국제 협력과 국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표준특허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공동 대응 협의체 운영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초기 표준화 과정부터 적극 참여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한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해 전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향후 표준특허는 6G, AI, IoT 등의 신기술로 확대되며 그 복잡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SEP 관련 분쟁에 대한 종합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표준특허(SEP), FRAND 협약, FRAND 라이선스, 특허풀, 크로스 라이선스, 금지명령(Injunction), 소송금지명령(ASI), 특허 포트폴리오

[Abstract]

Issues and solutions in international licensing disputes
in the field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Na, Jiwon⁸⁹⁾

Standard patents are patents that are essential for 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 established by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SDO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se standard patents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by increasing the compatibility of technologies, but at the same time, they also have the side effect of limiting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require standard patent holders to make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commitments to license all market participants on fair and non-discriminatory terms. FRAND commitments are an important device that promotes the widespread diffusion of standard technology and fair competition by partially limiting the exclusive rights of patent holders.

This study reviewed cases of international standard patent license disputes that occurred in the last decade to identify the rulings and policy trends of each country. We looked at recent major dispute cases in the telecommunications and automotive sector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policies and legal approaches of major countries. Based on the above review, this study presents response strategies at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levels.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recognize standard patent license disputes as an international trade issue and actively engag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omestic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corporate support, such as establishing a standard pat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and operating a joint response consultative body. And at the corporate level, it is importa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itial standardization process to prevent risks in advance and build a strong global patent portfolio to secure bargaining power. A compliance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the entire company must be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respond through employee training. As the scope of stand-

89) Associate Professor, Ajou University School of Law

ard patent license disputes is expected to expand to new technologies such as 6G, AI, and IoT in the future, the complexity of such disputes is expected to increase, and a thorough response system must be established accordingly.

key words: SEP, FRAND Commitment, FRAND License, Patent Pool, Cross License, Injunction, ASI, Patent Portfolio